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38812 판결 [점유회수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388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54123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1. B

2. C

변론 종결2015. 4. 30.

판결 선고2015. 6. 1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54123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8,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의 지상에 설치된 철재 경계 휨스를 수거하고, 위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1m'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아. 원고는 피고들이 2013. 7. 19. 이 사건 경계 철망을 설치한 날로부터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인 1년 내인 2013.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1) ○ 제5면 제14행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들" → "원고"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직접점유자이고 원고는 피고들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것(민법 제194조)과 달리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민법 제195조).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한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종관

판사박해빈

판사김재형

별지

1) 피고 C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제출된 2014.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그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그 시점도 2013. 7. 19.로부터 1년 내이다.